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76조(배기의 처리)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76조(배기의 처리) · 조문 원문 전체

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 · 연소 · 집진(集塵)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그림은 현장 점검 상황을 재구성한 설명 예시입니다. 실제 설치·사용은 법령·현장 조건·제조사 지침을 따르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-11-23